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정이유

구립 마포 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에 따라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저소득 계층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원칙

청소년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지역주민도 이용 가능(안 제4조)

나. 시설의 이용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구청장이 허락한 자(안 제5조)

다. 사용시간

주간, 야간으로 사용시간을 규정하고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강습료 및 사용료

1) 사용료 징수 근거 마련(안 제7조)

2) 사용료 반환 및 감면 근거규정 제정(안 제7조)

마. 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8조)

3. 제정근거

-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4. 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09. 10. 8. ~ 10. 28.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9. 11. 5)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 라. [별표 1] 사용료 등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청소년기본법」 등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

제4조(운영의 원칙)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항상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과 그 외 구청장이 허락한 자로 구분한다.

제6조(사용시간) ①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사용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간 : 06:00 ~ 18:00
2. 야간 : 18:00 ~ 22:0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별표 1에서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등을 납부 받은 후 사용자의 책임에 기인하지 않는 사유로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료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설 이용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급, 2급 및 3급 장애인
 6.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청소년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거나 수탁자와의 협약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위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 사용료	대 상	1 회 사용료	월 사용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22,5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26,600	
	대학생, 성인	1,800	7,200	14,400	21,600	28,800	32,400	36,800	
탁구장 (단식)	어린이	1,100	4,400	8,800	13,200	17,600	19,800	22,500	
	초·중·고생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3,400	26,600	
	대학생, 성인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헬스장	어린이	1,500	6,000	12,000	18,000	24,000	27,000	30,600	
	초·중·고생	1,700	6,800	13,600	20,400	27,200	30,600	34,700	
	대학생, 성인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45,000	51,000	
당구장	대학생, 성인	4,800	초, 중, 고생			3,600			
독서실	아동·청소년 및 성인	300	9,000원 (월간 사용료)						
시설 대관	200석 이내	2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0,000						기본 3시간
	300석 이내	3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5,000						
	400석 이내	400,000	기본 3시간 초과시 시간당 30,000						
비 고	1. 체육관은 수영장,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을 제외한 체육시설임								
	2. 시설대관은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의 사용료임								
	3.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은 기본요금의 30%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시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비 고	4.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1) 단일시설의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2) 1일,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각각 다른 시설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시설별 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4) 탁구장 이용시 복식사용은 개별 단식 2대분 사용금액의 30% 할인								
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구분	강습료 대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외국어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음악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대학생, 성인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정보·과학	초·중·고생, 어린이	30,000	40,000	50,000	65,000	77,000	86,000	
	대학생, 성인	35,000	50,000	65,000	82,500	96,500	107,000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초·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문예 및 창작	초·중·고생, 어린이	20,000	30,000	40,000	50,000	58,000	64,000	
	대학생, 성인	25,000	35,000	45,000	57,500	67,500	75,000	
상담	초·중·고생, 어린이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대학생, 성인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각종 심리검사	검사 소요시간, 채점 및 해석의 난이도에 따라 최고 30,000						

- 비고
1. 프로그램 영역 구분
 - 1)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
 - 2) 음악 : 성악, 국악, 기악 등의 음율 영역
 - 3) 정보·과학 : 컴퓨터·영상 관련 정보소양 영역 및 과학교실 등의 영역
 - 4) 생활체육 및 전통문화 : 에어로빅 등 생활체육활동 영역 및 한문, 서예 등 전통문화 영역
 - 5) 문예 및 창작 : 글짓기 등의 문예활동 영역 및 예술활동 영역
 - 6)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2. 강습료 할인
 - 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
 - 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 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
 3. 프로그램 운영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4.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강습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공공유사시설(구민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동 자치회관,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프로그램운영 강습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